

속이 짝찬 한국만두,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다

1. 기업 및 제품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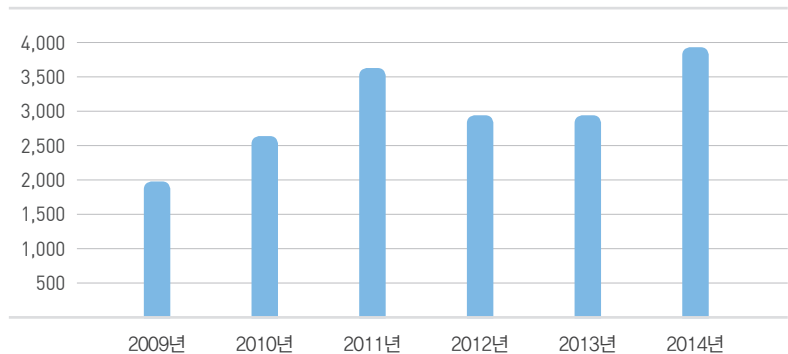
- A사는 '95년에 설립되어 만두, 국수, 음료수 등 한국식품을 제조하여 '08년부터 세계 20여개 국가로 수출하고 있는 중소기업
 - 유럽과 미국으로의 수출이 전체 수출금액(3,262천불)의 60% 이상 차지
- 제품소개

품명(HS)	적용협정	원산지결정기준	미소기준	기본세율	협정세율
만두(1902)	한·미	CC	10%(가격)	6.5	0

2. FTA 활용전 상황

- 서양인, 한국만두 맛에 감탄하다!

A사 해외 만두 판매량



- 대한민국 No.1 만두공장인 A사는 서양인 입맛에 맞는 식물성 콩고기 만두소를 개발하여 유럽진출에 성공

3. 장애 요소

(위기의 시작) 만두의 원산지가 한국산이 아니라고?

한-EU FTA 활용을 위한 인증수출자 획득 실패

- 유럽으로의 수출 비중(30%)이 가장 높았던 A사는 '11년 한·EU FTA 발효 전 세관을 찾아 원산지 인증수출자를 신청하였으나, 협정에 제11류에 해당하는 원재료는 역내산일 것을 요구하고 있어 역외산 밀가루(제11류)를 사용한 A사 만두는 원산지기준을 불충족하여 인증수출자 획득에 실패

(두번째 위기) 미국시장에서도 원산지를 의심받다!

만만치 않은 미국시장, 만두의 원산지를 의심하다

- '12년 한·미 FTA 발효로 재도약을 꿈꾸지만, 미국시장에 수출판로가 많지 않았던 A사는 미국 거래처 확보에 고민
- 본격적인 미국 진출을 위해 미국시장에 많은 거래처를 두고 있던 무역업체 B사를 통해 수출하였고 B사는 FTA 활용을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으나, 미국 거래처는 정확한 원산지 판정을 요구하며 원산지를 의심
- 만두의 한-미 FTA 원산지기준(CC)을 검토한 결과, 만두의 원재료인 중국산 당면과 만두가 HS 2단위 세번이 제19류로 동일하여 원산지기준 불충족임을 확인

예상치 못한 컨설팅 비용과 협력사로의 원가공개 위기!

- 원산지관리 능력이 없던 A와 B사는 민간컨설팅 업체에 컨설팅을 의뢰함에 따라 예상치 못한 컨설팅 비용이 발생하였고, A사는 컨설팅 업체와 B사로부터 수입산 당면의 미소 기준 충족 여부 심사를 위한 원가공개 요청을 받게 됨

미국 거래처의 거래중단 통보!

- 예상치 못한 컨설팅 비용과 타업체로의 원가공개 위기에 FTA 활용을 고민하게 되고, 미국 거래처는 답변이 늦어짐에 따라 거래 중단을 통보

4. 극복 방안

● 서울세관 컨설팅

- 만두의 20여개 원재료에 대한 품목분류 및 원산지 증빙서류 작성 방법에 대하여 재검토
- 수입산 당면의 가격이 한-미 FTA 미소기준(제품 가격기준 10%)을 충족하여 만두를 한국산으로 인정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관의 무료 제도인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 확인”을 통해 컨설팅비용 절감 및 타업체로의 원가공개 위기 극복
 - 세관차원의 원산지판정으로 수출자 발행의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에 신뢰성을 부여하여 거래 중단 위기였던 미국 거래처 확보

(과정1) 「YES FTA 센터*」을 통한 세관의 지속적인 컨설팅!

* FTA활용 단계에 따라 상이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맞춤형으로 지원

- **(준비단계)** ① 원산지관리 종합시스템인 FTA-PASS의 설치 및 방문 컨설팅으로 시스템 사용방법 교육 ② 서울세관에서 매주 수요일 실시하고 있는 FTA 상설교육 수강 ▶ 원산지관리 능력 향상
- **(활용단계)** ① 수출물품의 원산지판정 및 사전검증 실시 ② 원산지 증명서 형식요건 사전심사 ▶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지원
- **(해결단계)** 원산지관리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FTA 인력 연계 요청 (서울세관 하반기 구인·구직 연계행사 참여 예정) ▶ 원산지전담 인력 보충으로 FTA 활용 지원

(과정2) 한·EU 인증수출자 획득 실패를 수출 거래선 변화로 극복!

* FTA활용 단계에 따라 상이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맞춤형으로 지원

- 한-미 FTA 발효 이후 유럽 → 미국으로 수출 거래선 변경
 - 수출의존도가 높은 A사는 한-EU 인증수출자 지정 실패 이후 손실 절감을 위한 수출 거래선 다변화 등 여러 가지 자구책 마련
 - '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으로 수출 거래선을 변경하여 6.5%의 관세혜택 공유(한-EU FTA 관세혜택 미활용 금액 상쇄)

5. 활용 효과

- **(관세절감)** 한·미 FTA 활용에 따른 관세절감 효과 연간 약 3,200만원

- **(수수료절감)** 통관단계 물품취급수수료* 절감 효과 연간 약 800만원
* 물품취급수수료(MPF, Merchandise Processin Fee) 미국세관이 모든 수입물품에 대하여 징수하는 일종의 행정 수수료(최소 25달러 ~ 최대 485달러)
- **(가격경쟁력)** 관세 및 수수료 절감을 제품 원가에 반영하여 가격 인하
- **(수출증대)** '13년(상반기) 대비 '14년(상반기) 미국수출액 150% 증가
- **(거래처확보)** 미국의 유기농 식품매장인 Whole Food Market에 유통 시작
- **(마케팅효과)**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 물품을 마케팅으로 활용
- **(FTA활용 및 검증대비)** 원산지 관리 능력 향상으로 향후 발효될 FTA 협정에 신속하게 활용 가능하고, 검증에 사전 대비
- **(노하우공유)** 무역업체를 통한 수출 마케팅 노하우 공유로 독자 수출판로 개척

6. 시사점

-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을 통한 생산-수출의 Win-Win 전략
 - 우수한 기술력과 생산력은 갖추고 있으나 해외시장 개척능력이 미비한 업체와 수출시장 확대능력은 갖추고 있으나 제품 생산능력이 없는 기업이 다수 존재
 - 생산기업과 무역기업의 특화영역 간 결합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가능하게 하고,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을 통한 원산지의 신뢰성 확보 및 원산지 관리 능력 향상으로 FTA 활용을 극대화
- 농수축산가공품도 FTA를 활용하면 경쟁력 확보 가능